

## 산재보험이 무엇인가요?

• 산재보험은 1964년부터 시행되어온 사회보험으로 현행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먼저 도입된 제도입니다.

**\*4대 사회보험: 산재보험, 고용보험, 건강보험, 국민연금**

- 사무실, 공장, 건설현장, 식당 등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노동자는 누구나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와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뿐만 아니라 상담, 재활, 직업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다치거나 병에 걸린 노동자가 건강하게 가정과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입니다.

## 보호대상이 되는 산재는 무엇인가요?

- 업무 중 발생한 모든 사고와 질병이 산재보험의 보호대상입니다. 단, 3일 이내에 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사고와 질병은 예외로 합니다.



## 어떤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
치료와 관련한 <b>요양급여</b>	진료비 :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용 간병료 : 간병에 따른 비용 이송료 : 통원치료 등에 따른 이송비용 기타 : 보조기, 본인이 직접 낸 치료비용
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<b>휴업급여</b>	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%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지급
오랜 치료에 따른 <b>상병보상연금</b>	치료기간이 2년 경과하고 중증요양상태(제1급~3급)에 해당하는 경우,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 지급
장해가 남은 경우 <b>장해급여</b>	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, 장해등급별(제1급~14급) 해당하는 장해보상비 지급
치료 후 간병 비용 <b>간병급여</b>	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,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간병급여 지급
직업 복귀를 위한 <b>직업재활급여</b>	산재장해인(제1급~12급)을 원직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장복지원금 등 지급 실업상태에 있는 산재장해인(제1급~12급)이 직업훈련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급
사망에 따른 <b>유족급여</b>	사망한 노동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
장례를 위한 <b>장의비</b>	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

## 보험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?

- 산재가 발생하면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병원의 협조를 받아 요양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.



궁금하신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 
**고용노동부 1350**  
**근로복지공단 1588-0075**  
로 문의하세요

노동자와 자영업자를 지키는  
튼튼한 일터 안전망

# 산재보험 이렇게 달라졌습니다





# 1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

- 금년 7월 1일부터 그동안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**상시노동자 수 1명 미만 영세 사업장과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**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.
- 산재보험이 적용되면 사업주가 **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체납했다**라도 **산재보상**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사업장\*도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,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\* 법인이 아니면서 상시노동자 수가 5명 미만인 농업, 임업(벌목업 제외), 어업, 수렵업 사업장



# 2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확대됩니다

- 노동자 신분은 아니지만 노동자와 유사하게 업무에 종사하고 산재 위험에 노출되는 **1인 자영업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**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됩니다.

### 1인 자영업자: 임의가입

-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② 화물자동차운수사업
- ③ 건설기계사업 ④ 퀵서비스업 ⑤ 예술인 ⑥ 대리운전업
- + 금년부터 추가된 업종 ⑦ 금속제조업 ⑧ 자동차정비업
- + 내년부터 추가되는 업종 ⑨ 음식점업 ⑩ 도·소매업

### 특수형태근로종사자: 당연적용(적용제외 허용)

- ① 보험설계사 ② 레미콘기사 ③ 학습지 교사 ④ 골프장 캐디 ⑤ 택배기사
- ⑥ 퀵서비스기사 ⑦ 대출 모집인 ⑧ 신용카드 모집인 ⑨ 대리운전기사
- + 내년부터 추가되는 업종 ⑩ 건설기계관리법 상 전체 27개 건설기계 중 레미콘을 제외한 나머지 26개 건설기계 기사

- 상시노동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 사업주의 **무급가족종사자** 산재보험 가입 허용, **해외 파견노동자** 산재보험 적용강화 (선택→의무)를 위한 법령 개정 중에 있습니다.

\* 상시노동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지금도 산재보험 가입 가능



# 3 출퇴근 길에 발생한 사고까지 산재보험이 보호합니다

- 금년부터 사업장 내에서의 사고 뿐 아니라 **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**도 보호대상이 됩니다.

\* 도보, 자전거, 자가용, 대중교통 등 이동수단에 관계없이 통상적인 경로·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

- 출퇴근이란 집과 직장, 직장과 직장 사이의 이동으로
  -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,
  -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사유로 경로를 벗어난 경우에는 출퇴근으로 인정됩니다.

### 일상 생활에 필요한 행위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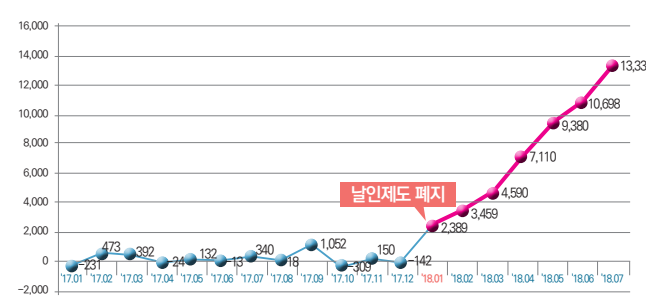
1. 일상생활 필요 용품 구입
2. 직업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·훈련 이수
3. 선거권·국민투표권 행사
4. 보육기관·교육기관의 자녀 등 통학
5. 의료기관에서의 진료
6. 요양 중인 가족 돌봄



# 4 산재 신청의 부담을 확 낮쳤습니다

- 산재신청 서류에 있던 **사업주 확인 날인란을 금년부터 삭제**하고 회사로의 확인은 산재신청 서류 접수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수행합니다.
-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회사의 확인없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산재신청 하면 됩니다.

### 전년 동월 대비 산재신청 증감(누계)



- 영세 사업주 보호를 위해 **보험급여 징수액에 한도**를 신설했습니다.

**징수액 한도**  
보험가입 신고 또는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5배 이내

### 산재보험급여 징수기준

- ① 보험가입 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 산재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50%
- ②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 산재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10%

- 내년부터는 **개별실적요율제 인상 한도를 대폭 낮춰** 산재신청에 대한 부담을 해소했습니다.

**인상 한도**  
±50% → ±20%  
(대상 사업장도 10인 이상 → 30인 이상으로 축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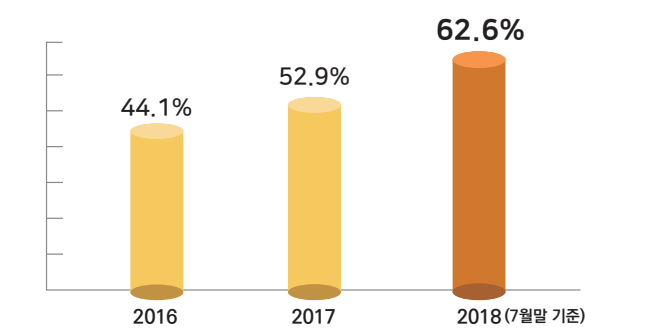
\* 개별실적요율제: 사업장 별 산재발생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



# 5 산재 심사 절차를 대폭 개선했습니다

- 작년 9월부터 **추정의 원칙**을 적용하여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입증 노력이 없이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.

### 업무상 질병 산재승인률



- 금년 1월부터 **과로의 판정기준(뇌심혈관계질환)**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. (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→ 52시간+업무부담 가중요인 고려)

\* 근골격계질환, 정신질환에 대한 인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중

- 이미 산재로 인정된 직업성 암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판정토록 절차를 개선하고 있습니다.

\* 재해조사 과정에서 동일·유사과정 종사로 확인된 경우에는 역학조사 생략하고 판단(추정의 원칙 적용)

\* 금년 7월부터 반도체·디스플레이 종사자 적용 중(8개 질병) → 다른 업종 및 대상질환 확대 연구 중

- 업무상 질병으로 의심되는 경우, 산재로 승인이 되기 전부터 치료를 지원합니다.

\* 업무관련성 특진(산재병원 등)과정에서 당연인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 승인 결정까지의 치료비를 산재보험에서 지원(불승인 되더라도 지원)